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은 거래처(또는 예금주)와 (주)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나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 장 공통사항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외화보통예금
2. 외화당좌예금
3. 외화정기예금

제 2 조 지급시기

- ①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은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 ② 외화정기예금은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 ③ 이 약관이 적용되는 외화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10조에 의거하여 지급 또는 해지 가능하고, 원화 및 해당 외화로 지급이 가능하다.

제 3 조 지급특례

은행은 거래처의 수표나 지급청구서 없이 외화보통예금 또는 외화당좌예금을 거래처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각종이자, 지연배상금,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원금, 외화표시 내국신용장결제대금,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부도대금

제 4조 이자계산

외화예금의 이자는 국제관행에 따른 통화별 연간일수를 적용하여
외화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 단위 미만은 버린다.

① 영국 파운드화(GBP), 호주 달러화(AUD), 홍콩 달러화(HKD), 싱가포르
달러화(SGD) : 365일 적용

② ①항 이외의 통화 : 360일 적용

제 5 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

**①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로 한다.**

② 해당 통화를 현찰로 지급하거나 미 달러화 이외의 외화현찰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외화현찰수수료(지급시점에 영업점 고시)를 징수한다. 단, 동종의
외화현찰입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③ 원화대가 매매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동종표시 외국환으로 대체되는 경우로서
입금당일 출금의 경우에는 대체료(지급시점에 영업점 고시)를 징수한다. 단,
수출입대금과 관련한 경우에는 입금당일 출금하더라도 대체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④ 전월 평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음의 값)인 통화의 예금의 경우, 은행은
계좌유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동 수수료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해당일
기준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최종 잔액에 대하여 사전
공지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다. 동 수수료율은 해당 통화의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수료율은 한국씨티은행의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변경된 날로부터 적용된다. 해당
통화의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으로 해당통화의 수수료
부과대상 거래처에게 변경 즉시 개별통지한다. 다만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전항의 수수료는 달리 약정하지 않는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원금에서 차감되며, 수수료 산정 기간은 전월 수수료
납부일부터 당월 수수료 납부 전일까지로(초일 및 말일 산입) 한다. 단, 수수료 차감
전 인출요청 또는 계좌해지 시 그 때까지 발생한 수수료 합계액과 인출요청액수의
합이 예금잔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은행은 그 때까지 발생한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일을 수수료 계산기간에 산입한다.
계좌해지 시 수수료는 원화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시 적용할 환율은 납부시점의
기준환율로 한다.

⑥ 이용자는 제②항과 제③항의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환거래기본약관의 제 9조 약관의 변경 사항을 준용합니다.

제 6 조 약관의 적용

① 외화예금거래에는 외화예금 종류별 특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특별약관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된다.

② 외화예금 취급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규 등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업무취급 지침 및 감독기관이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7 조 양도 및 질권의 설정

① 거래처가 외화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단, 담보제공의 경우, 거주자의 외화예금을 국내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허용되는 예금·신탁·증권 등을 금융기관의 자기여신에 관련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입출금이자자유로운예금은 질권 설정 할 수 없다.

제 8 조 관련 법령 적용

이 외화예금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 적용된다.

제 2 장 외화보통예금

제 9 조 이 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3,6,9,12월의 둘째주 최종영업일(이하 "기준일")에 셈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에 원금에 더한다.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제 3 장 외화당좌예금

제 10 조 이 자

이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준 용

수표용지교부, 수표금지급과 지급위탁취소, 수표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 수표금지급과 면책 등, 해지, 해지 후 처리는 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외화정기예금

제 12 조 이자

① 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이 예금의 이자는 분할 지급하지 않는다.

② 만기일 후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1/2을 적용하여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에 따라 아래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1. 예치기간 1주일 미만 : 중도해지이율 = 약정이율 \times (1- \ast 차감율)

\ast 차감율= 해지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잔존기간/ 계약기간

2. 예치기간 1주일 이상 : 약정이율의 1/3 해당 이율

3. 예치기간 1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1/2 해당 이율

4. 예치기간 3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2/3 해당 이율

제 13 조 장기에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

①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2조 제3항에 불구하고 처음 예금일로부터 계약변경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2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하는 경우, 그 이자는 변경 전 처음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2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